PART 3 지역자산화 사례 소개

충남 서천 사회적 기업 자이엔트
청년 주거 공간 제공으로 청년 유입 촉진

6년 이상 비어있던 지역의 낡은 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서천에서 일하며 살고자하는 청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유부엌 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경남 거제 예비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
게스트하우스 공간마련으로 이주청년 정착 도모

조선업 근로자 대상 숙박건물을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공동거주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숙소 제공, 지역주민과 청년이 협업하여 거제 인근 섬 등 자연경관을 즐기는 캠핑거리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PART 4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체결

협약기관

· 행정안전부 – 농협은행 – 신용보증기금

협약내용

· '19년 시범사업 및 '20~22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의 협약체결 ('19.10.21)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농협은행 37.5억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 (37.5억원)의 10배(375억원) 보증, 건당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주민이 지역공간을 공유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ART 1 지역자산화 개념 소개

지역자산화 정의

· 지역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건물이나 토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 시민자산화, 공동체자산화, 사회적부동산 등으로도 불림

지역자산화 등장배경

- 도심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 내몰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격차 확대
-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는 빈 집 등 유휴공간 증가로 인한 지역 쇠퇴

⇒ **지역의 공간을 공동체가 직접 소유 및 운영하는 지역자산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및 유휴공간 증가 방지로 지역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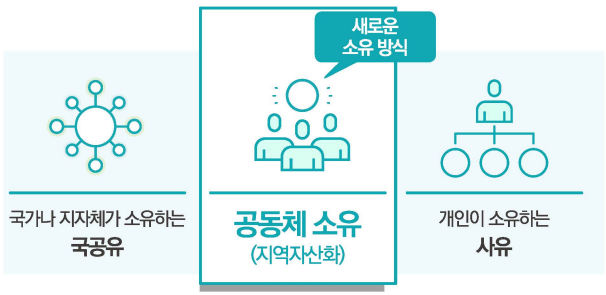

지역자산화 의의

1) 국공유(國公有)나 사유(私有)가 아닌 새로운 소유방식

- 국공유의 경우 공공성은 보장되지만 자산활용에 있어서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뒤따를 수 있고
- 사유의 경우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지만 자칫 과도한 수익추구에만 사용될 수 있는데
- 지역자산화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결정함으로써 국공유와 사유의 단점을 보완

2)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안정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 관리, 이용, 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

PART 2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소개

지원내용

내용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유휴공간 매입비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

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유와 운영에서 지역주민 참여계획 필수

규모 연간 약 25건 예정('20~'22년 총3년간 약 75건 예정, 1건당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을 통한 대출지원)

지원조건 융자금리 3.5% 내외 (20.1월 기준, 민간단체 부담 2.5%, 지자체 이차 보전 1%)
※ 민간단체 부담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보증료율 0.5% (민간단체 부담)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개별 사업자가 지자체의 이차보전 자원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됨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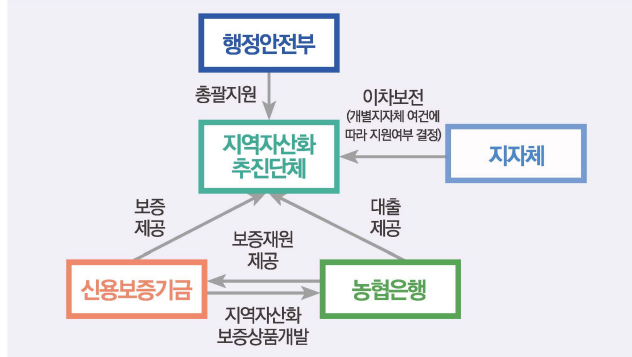

추진일정

신청접수 (3월)	심사 (4~5월)	선정 및 보증서 발급 (6월)	대출금 지원 (6~7월)
광역 지자체 접수	서류심사(4월) 현장심사(5월) 보증심사(4~5월)	사업자 선정 통보 신보 보증서 발급	농협 대출금 지원

신청방법

접수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신용보증기금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세부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접수기간 3월 5일(목) ~ 3월 31일(화)

접수장소 광역지자체 사회적 경제기업 담당부서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044-205-3417~8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38

※ 이차보전 문의는 **각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문의**